

石油事業法 改正에 바란다

『短期差益노린 석유수입 막기위해 석유무역업도 허가사항으로 해야』

金 亨 俊

〈油公·業務部〉

I. 概 説

石油事業法은 70년초 石油가 主宗에너지源으로 위치를 차지함에 따라 精油產業을 전전하게 육성하고, 原油의 도입과 石油의 유통 및 가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70년 1월 1일 法律 第2183號로 제정된 이래, 75년 7월 25일 法律 第2780號로 일차 대폭 개정되고, 77년말과 82년말에 각각 法律 제3071호 및 第3645號로 두차례 부분改正을 거침으로써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정부에서는 石油事業法이 75년에 전면 개정된 후에도 10년이 지났을 뿐만 아니라, 국내외 에너지情勢 및 에너지政策方向의 변화와, 경제운용방식의 民間主導로의 전환 및 行政의 기능이 점차 규제위주보다는 調整的 입장에서 수행해야 하는 등 諸般 환경적 여건이 변화하였고, 法体系 및 내용상으로도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현행 石油事業法의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한다.

원래 法이란 자연현상이 아닌 사회현상을 그 대상으로 하며, 社會生活關係를 잘 유지하자는 것이 法의

목표인 동시에 내용인 것이다.

그러므로 法을 통로로 하여 제반 社會·經濟政策이 수립, 시행, 還流(feed back)되고 있으며, 경제여건이나 정부정책 등, 사회현상(즉 法의 대상)이 변천될 경우, 法도 따라서 변천되어야 한다.

石油事業法도 石油事業法을 통로로 하여 경제생활을 잘 영위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원유의 도입-경제-판매 등과 관련된 제반 경제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이를 조정, 육성, 규율하자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石油事業法의 법적인 위치와 제정 이후 그간의 변천내용을 알아본 다음, 이를 토대로 경제·사회 여건변화에 따른 바람직한 개정방향에 대해서 살펴보자 한다.

II. 石油事業法의 法的 위치

1. 石油事業法과 규제행정

石油事業法은 행정법학상 규제행정의 근거가 되는 하나의 법률로서, 적극적으로 社會公共의 복리를 증진

하기 위하여 石油의 도입, 정제, 판매 및 이와 관련된 제반 경제활동을 규율하는 法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규제행정이란 「국가가 經濟秩序 또는 생활환경을 일정한 방향으로 정비·개선·유도하고, 형성함으로써 적극적으로 社會公共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개인의 社會·經濟活動을 규제·조정·보호·조장·지도하는 행정작용」이라고 일반적으로 정의된다.

규제행정의 주체는 국가(정부투자기관, 地方自治團體, 私人 등에 위임 가능)가 되고 목적은 社會公共福利의 증진이며, 그 수단으로서는 명령적 행위(下命, 허가 등), 형성적 행위(특히, 인가 등), 권력적 수단(行政強制), 非權力的 수단(권고 등 행정지도, 지침적 행정계획 등), 또는 간접적 수단(租稅, 財政, 금융 등 경제정책) 등을 들 수 있다.

2. 規制行政의 法的 근거와 유형

위에서 말한 規制行政의 직접적인 근거는 물론 個個의 법률이 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個個法律의 上位·母法인 헌법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즉, 헌법 第120條(경제질서의 기본원칙 및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 第121條(국토와 자원의 보호 및 그 개발·이용계획의 수립), 第126條(對外貿易의 육성·규제 조정 등 경제조항), 第9條(인간의 존엄과価値), 第22條(私有財產制), 第29條 내지 第34條(生活權的基本權) 등이 그것이다.

石油事業法도 이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憲法의 기본 정신 아래 법률적 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앞으로의 石油事業法改正은 이러한 기본정신에 부합되는 법체계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규제행정의 유형은 크게 ① 經濟規制行政과 ② 環境規制行政으로 구분되는데 前者는 「경제생활을 대상으로 하여 경제활동 또는 그 경제활동의 총체로서의 경제질서 자체의 합리화와 적극적 형성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데 대하여 후자는 「國土(生活空間)를 대상으로 하여 인간의 경제·사회·문화적 생활을 위한 환경적·공간적 조건의 합리화와 적극적 형성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작용」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볼 때, 石油事業法은 上記 규제행정의 두 가지 유형中, 경제규제행정의 근거법률이 된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石油事業法의 개정방향의 제시에 앞서 경

제규제행정에 관한 일반적인 고찰이 있어야 하겠다.

3. 經濟規制行政의 法的 한계

경제규제행정이란 「행정주체가 그 경제정책을 실현할 목적으로 경제의 자율적 순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경제질서를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형성하며, 그 방향에 위배되는 경제활동을 규제·조정하는 행정작용」으로서 그 목적은 自由競爭市場의 確保(獨禁法 등 경제기반 조성), 經濟過程 전체의 利益貢獻作用(물가안정, 완전고용 등), 특정산업부문의 보호·助成(기간산업육성, 수출산업진흥 등), 긴급사태의 예방 내지 회피(不足物資의 供給確保, 과잉생산의 조정 등) 또는 생산활동 내지 거래행위 自体를 규제대상으로 하던가 또는 物的要素에 착안(물자, 자금 등)하는 등, 경제·사회적 여건변화에 따라 多枝·流動의이라 할 수 있다.

經濟規制行政은 他行政作用과는 달리 종합성과 계획성, 지도성, 행정수단의 다양성 및 행정기관에 대한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는 등의 특색을 갖고 있으며, 자유경제와 전체적 計劃經濟와의 중간에 위치한 경제구조에 작용하는 행정작용으로서 규제행정을 구속할 수 있는 객관적인 法原則의 확립이 특히 필요하다.

經濟規制行政의 수단으로서는 ① 극히 예외적으로 직접 법령에 의한 규제(例: 양곡의 정부매도, 기준환율에 의한 外國換去來 등)와 행정처분에 의한 규제(下命, 許可, 인가, 특허 등)의 효율적 관여와 ② 私法形式에 의한 개입(예: 토목사업, 공익사업 등), 行政指導(助言, 권고), 행정계획 등의 非權力的 관여 및 ③ 租稅, 재정, 금융정책등 간접적 관여를 들 수 있다.

이중 특히 비권력적 관여는 행정수요의 증가에 따라 經濟規制行政의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法의 근거의 요부에 대한 이론적 대립은 논외라 하더라도, 資本主義를 기본으로 하는 우리 나라 憲法下에서 조리상의 한계 내지 헌법상의 일반원칙의 제약을 받게 된다고 할 것이다.

즉, 국가의 개입은 自律經濟秩序의 모순의 是正과 민간의 힘만으로는 실현불가능한 社會的 필수물자 또는 役務의 제공 내지 조성에 한정되어야 하며 (補充性의 원리), 합리적 이유없이 特定企業이나 특정집단의 우대 등 불합리한 차별은 불허하고, 국가의 규제는 經濟政策達成을 위한 필요·최소한도내라야 하며, 과도한 규제나 보호는 금지되어야 한다(平等原則·比例

則)는 등이 그것이다.

현행 石油事業法의 개정방향의 설정이나 앞으로의 운용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非權力的 규제행정의 일반적 제약원리에 입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은 두말할 나위 없다.

III. 石油事業法의 제정 및 改正變遷

1. 70년초 제정된 主要內容

石油가 主宗에너지로 됨에 따라 精油產業을 건전육성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해 최초로 제정된 石油事業法은 全文 24條 및 부칙으로 되어 있으며,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총칙부문

▲法의 목적이 「석유정제업 등의 사업을 조정·육성하여 石油의 안정되고 저렴한 공급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으로 하여 적극적으로 사회공공의 복리를 증진하고자 함을闡明하고 있다.

▲상공부장관은 매년 5년간의 석유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변경할 때에도 마찬가지).

(2) 사업의 허가 및 신고사항

▲석유정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상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석유수입업 및 석유제품販売業(注油所, 販売代理店 이상의 규모)을 하고자 하는 자는 商工部長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規制事項

▲상공부장관은 석유제품가격의 부당한 양등 또는 하락의 우려가 있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最高額 또는 最低額을定할 수 있으며, 이를 정하였을 때에는 고시하여야 한다.

▲原油의 구입계약 또는 수송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商工部長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國產原油의 구입계약 또는 韓國선박에 의한原油의輸送契約 체결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石油精製業者가 ① 결격사유 해당시나 ② 许可를 받지 않고 정제시설의 新·增設·改造時 ③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거나 ④ 조정명령의 위반 또는 사업에 관한 보고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精製業許可(또는 신·증설허가)의 取消 또는 1년 이내 기간동안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商工部長官은 ① 戰時·사변·천재지변으로 인하거나 ② 国家安全保障을 위하여 또는 ③ 国民經濟生活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④ 기타 정부석유수급계획상 事業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事業調整에 관한 명령 또는 처분을 할 수 있다.

한편, 동 규정에 따라 상공부장관은 同施行令(第10조)에 의거 石油精製業者の 石油販売業者에 대한 석유제품의 공급 및 판매계열화 促進에 관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색이라 할 수 있다.

(4) 罰則事項

▲品質低下 판매행위는 10년 이하 징역형 또는 100万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타 벌칙사항은 모두 벌금형만으로 되어 있고, 体刑이 없는 것이 특징적이다.

2. 75年 1차改正의 주요내용

정부는 1차 석유위기이후 변화하는 國際石油情勢에 대처하고 국내石油類需給 安定을 기하고자, 75年 7月 25日 石油事業法을 대폭 개정하였으며, 주요改正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事業의 허가사항

▲석유판매업을 許可制로 전환하였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石油의 판매업 및一定規模 이하의 판매업은 허가대상에서 제외시켰다(아스팔트, 윤활유판매업, 프로판·부탄판매업, 판매소).

▲개정전에는 石油精製業은 모두 허가를 받아야 하였으나, 改正後 100B/D 이하의 윤활유생산업자는 허가대상에서 제외시켰다.

(2) 規制事項

▲종전 石油精製業의 허가취소 또는 1년이내 기간동안 사업의 정지명령사유에 ① 許可받은 후 정당한 이유없이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② 1년

이상 계속 허지한 때 및 ③ 고시가격을 위반하여 판매한 때를 추가하였으며, 精製業 허가취소사유 외에 石油輸出入業 정지와 石油販売業의 허가취소 및 사업정지명령 사유도 신설 규정하였다.

▲精製業者, 石油輸出入業者, 석유판매업자의 행위의 금지조항을 신설하여 ① 品質低下販売行爲, ② 담합 및 差別的 行爲 ③ 生산감축, 出庫제한행위 ④ 告示價 違反販売行爲 ⑤ 매점매석하는 행위시 처벌을 받도록 하였다.

▲수급안정을 위한 調整命令事項의 범위를 확대하고, 석유배급 등의 조치권을 신설함으로써 긴급사태발생시 정부의 수급통제 및 조절기능을 강화하였다(현행 규정과는 발동요건이 다르고, 각号規定은同一함).

▲그외 석유사업자의 장부비치 의무와 商工部長官의 檢查權限條項을 신설하였으며, 石油消費者에게 소비실적(계획)을 신고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기타 개정사항

▲상공부장관의 권한위임사항을 신설하고

▲용의 정의를 추가시켰으며,

▲商工部長官의 需給計劃고시의무를 삭제하고

▲벌칙사항으로서 극히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두 체형으로도 처벌할 수 있도록 강화하였다.

이상과 같이 1차 대폭 改正으로 종전의 전문 24條가 30條로 확대되고, 훨씬 체계화된 골격으로 발전되었다고는 하지만, 立法論의으로는 종전보다 상당히 후퇴하게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3. 77年 2次改正의 主要內容

77년 12월 31일 정부는 石油事業法을 2次로 개정하고, 석유수급 및 가격의 안정과 石油開發事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石油事業基金을 설치하였으며, 한편, 78년 1月 動力資源部가 발족됨에 따라 商工部所管事項이 動資部所管으로 이관하였다.

이때 설치된 석유사업기금은 2次 석유위기가 발생된 79년 하반기(79년 7월 10일)부터 운용되기 시작하였고, 이 기금의 관리자로는 79年 3月에 발족된 韓國石油開發公社로 지정되었다.

2次의 改正으로 신설된 基金關係條項 즉, 기금의 조성, 용도, 관리, 차입 등의 규정은 현행규정과 거의 같으므로 여기서는 그 내용을 생략한다.

4. 82年 3차개정 주요내용

정부는 경제여건의 변화에 적응하고 品質管理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82년말에 3차로 改正하였다. 이때 개정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事業의 許可 및 申告에 관한 事項

▲石油化學製品을 만드는 과정에서 石油製品이 副生될 경우 精製業許可對象에 제외시키는 대신 石油販賣業의 허가대상으로 하였다.

▲종전 허가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었던 석유정제업 및 판매업을 신고대상으로 전환하였다(2 천B/D 이하의 용제, 아스팔트, 윤활유생산업체 및 용제, 아스팔트, 윤활유판매업).

(2) 規制事項

▲조정명령의 발동요건을 「……石油유통질서의 혼란으로 인하여 국민생활의 安定과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로 改正, 구체화시켰다.

▲석유수입업자가 기금납부일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을 물도록 하였다.

(3) 品質管理에 관한 사항

▲石油類製品의 品質管理에 대한 업무관장을 종전의 工業振興府에서 動資部로 이관하고

▲品質低下販賣行爲시 벌칙을 강화하고,

▲動資部長官의 품질검사, 기준, 방법 등을 動資部令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유사석유제품의 생산 및 판매금지 조항의 신설 및

▲석유사업기금의 용도에 品質管理事業을 추가시켰다.

(4) 기타개정사항

▲과정금부과규정을 신설하고,

▲별금형의 현실화 및

▲일부 경미한 법령위반시 300万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였다.

IV. 石油事業法의 改正方向

1. 改正方向

이상과 같이 石油事業法은 헌법의 정신에 기초한 경제규제행정의 근거가 되는 하나의 법률로서 여타 경제규제법과 어깨를 같이 하고 있으며, 행정수요의 증대에 따라, 세차례의 개정결과, 石油事業에 대한 규제가 점차 강화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石油事業法 개정에 있어서는 석유사업과 이에 따른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의 강화만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의문이며, 오히려 국내외 經濟與件의 변화에 따라 경제현실과 現行石油事業法体系와의 乖離(規制일변도)를 좁혀나가기 위하여, 石油事業의 건전육성 및 지원을 위한 방향으로 법개정이 요청되고 있다.

부연하면, 70년대에는 경제관계규율법이 지금보다 미비하였으므로 石油事業法에서 가급적 모든 것을 다 수용하고자 하였으나, 80년대에는 이와는 상황이 다르므로, 규제할 것은 규제하되, 石油事業에 고유한 건설적인 산업활동은 고무하여야 할 法精神이 특히 표명되어야 하겠다.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 앞으로의 石油事業法 개정방향의 정립을 위하여 검토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立法原則論

가. 立法의 民主化

石油事業法의 종전의立法例를 보면, 판매업의 경우 당초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되었으며, 조정명령 발동사항의 범위가 한층 넓어졌고, 石油配給 등의 조치 신설, 罰則適用時 체형의 강화 등 각종 規制條項이 강화되어 왔으며, 法條文도 상당히 복잡다기화되었다.

이러한 규제강화는 다분히 行政便宜主義에 기한 것으로서 입법론적으로 상당히 후퇴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우리의 경제가 自律經濟취지를 표방한 이상, 가급적 石油事業에 관해서도 개방적이라야 할 것이며, 장기적으로 겸토되어야 할 사항은 石油販売業의 신고제로의 전환, 基金制度의 철회, 경제별 위주의 별차적용 등이지만, 단기적으로는 調整命令發動範圍의 축소, 극심한

石油波動 이외에는 석유배급 등 조치의 適用排除 등으로서 가급적 규제를 줄여나가야 하며, 한편 행정내부적으로 石油政策審議會를 設置하여 行政의 민주화의 실효를 확보해 나가야 하겠다.

(참고로 日本의 石油業法에는 법규위반시 모두 經濟罰을 적용하고 있다.)

나. 立法技術論

국가의 법률은 憲法 - 法律 - 施行令 - 施行規則 - 告示 등으로 하나의 체계를 이루고 있으며, 이러한 체계 하에서 일관된 原則이 나오는 것이다.

현행 石油事業法을 보면, 입법체계상 立法事項으로서 법률에 규정되고, 원칙화되어야 하는 사항이, 정당한 근거없이 시행령 또는 하위 行政상 입법에서 규정됨으로써 법체계에 혼란을 가져오고 있으며, 他關聯法律 또는 시행령과의 저촉시 어느 규정이 우선하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또는 逆으로 항상 변동하는 石油事業이라는 경제분야의 확충을 지원, 육성하고 탄력성 있게 규제하는 역할은 시행령이나 하위 行政상 입법에서 규정되어 유연성 있게 經濟現象의 변화에 대처하여야 하지만,同事項이 모법인 석유사업법(法律)에 규정되고 分量的으로 많은 사항이 母法에 규정됨으로써 경제현상이 변할 때마다 변경해야하거나 또는 현실성이 없어지는 모순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立法技術論의으로 입법사항인 것과 아닌 것을 세밀하게 검토, 엄격히 区分規定하되, 立法事項이 아닌 것은 과감하게 하위법규에 위임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調整命令措置는 석유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단기적·임시적 조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존속하게 된다면, 이는 立法事項(法律에서 규정될 사항)으로 해야 할 일이며, 石油事業法은 石油事業에 관한 母法으로서 가급적 가장 간단·명료하게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로 英国 石炭事業法은 전문 5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고, 일본 석유업법은 본문 15조 잡칙 3조 별칙 4조로 간단하게 구성되어 있어 우리와는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

(2) 石油事業 고유영역 이외의 分野除外

石油事業法은 국민의 석유사업에 관한한 모든 사항

은 규율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즉, 석유류의私人間의 거래나 기업간의 법률적 행위에 대해서는 民·商法 등 일반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고, 일반經濟秩序에 대해서는公正去來法이 적용되고, 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해서는消防法 및 가스관제法에서 세밀하게 규율되고 있으며, 기타 많은 법률에서 일반물자로서의石油에 관련된 경제활동을 규제하고 있으므로石油事業法에서는 석유사업에 고유한 영역만을 대상으로 하여도足할 것이다.

石油事業에 고유한 영역이라 함은 예컨대石油精製業, 판매업의 규제, 판매계열화, 석유류품질관리, 기금, 원유도입의 규제, 비상시 위해예방 등이 그것이다.

(3) 규제요건의 세분 및 明確化

법규가 정부의 임의적 판단에 따라 許可의 취소나事業停止命令 또는 별칙의 적용 등 무엇이든지 적용하게 한다거나, 또는「必要하다고認定할 경우…를 할 수 있다」는 것과 같은 벽지위임식 규정은 가급적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法適用要件의定量을 염격히 하고, 정부의 판단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여法이 정한 적용요건에 따라法이 시행될 수 있도록補完되어야 할 것이다.

(4) 石油產業 育成에 관한 사항의 补完

우리 나라石油產業은 80년 이후 급속한 국내외 여건변화에 직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므로 시설의 고도화는 물론,新에너지源의 개발등, 이에 대한 대응책이 시급한 현실이다.

그러므로石油事業法의 개정시,石油產業이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적극 지원방안도 아울러 강구함으로써石油事業法이 경제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실천적 도구로서도充分히 활용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곧石油產業의 국제경쟁력의 강화 및 국가경제정책방향과도 부합된다 하겠다.

2. 石油事業法 改正意見

이와 같은石油事業法의基本改正方向에 따라 구체적 개정의견은 다음과 같다.

(1) 石油事業의 許可에 관련된 事項

가. 許可事項이 명백히 규정되어야 할 部分

현행 제7조 규정에는「石油精製業者가 精製施設을 新·增設하거나 중요한 시설의 개조시, 動資部長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따르면 개조의 의미가 모호하고, 개조의 의미가新·增設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石油精製業者가 중요한 시설을 new·증설 또는 개조하고자 할 때에는 動資部長官의 허가를 받는 것」으로 한다면本條의 취지가 명백하게 규정된다 할 것이다.

나. 規制가 強化되어야 할 사항

現行第11條 규정에는石油輸出入業을 하고자 하는자는 動資部長官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石油精製業, 판매업이 허가사항인데 반해, 규모가 훨씬 커질 수 있는石油輸出入業을 신고사항으로 하는 것은 업계간 불균형이라 생각된다.

한편輸出入에 관한 규제가 점차 완화되어 가는 추세에 있으므로, 이에 편승, 短期差益을 노린輸出入業者の 난립으로因한 국내유류수급의 혼란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는石油輸出入業도 허가사항으로 개정되어야 하겠다.

다. 許可基準에 탄력성이 부여되어야 할 사항

현행第12條 규정에는석유판매업은動資部長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률적인販売業 허가기준의 장기적 시행에 따라(75년 이후 계속 동일하게 시행되어 왔음), 불필요한施設의重複投資를 가져오게 된 것이 사실이다.

오지·벽지의 판매를 위해서는 지역수요에 대비한 일정 규모 이상의 저장시설이 필요하나, 大都市地域 또는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서는 저장시설이 불필요하며, 輸送裝備의 경우에도 지역별 수요에 맞는 규모이면足하다.

실제로 저장시설을 이용하는 대리점은 극소수이며, 기준 이하의 저장시설보유 대리점도 상당수에 있다.

그러므로 지역별 특성에 따라 허가기준의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설투자에 따른 고정비부담을 최대한 줄이도록 해야 하며, 이는 국가경제적으로도 이득이 됨은 물론이다.

따라서石油販売業의 허가의 기준은「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별수요, 지리적 위치 등을 고려하여 허가기준의 범위를 정하되, 그 구체적 허가기준 사항은 市·道知事에게 위임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것이 현실에 맞는 개정이라고 생각된다.

라. 法施行效果差異에 따라 區分規定되어야 할 사항

현행 第13條 규정에 의하면, 석유경제업자가 ① 缺格事由 해당시 ② 허가받지 않고 新·增設, 개조시, ③ 허가받은 후 事業未開始 또는 1년 이상 休止時 ④ 부정한 방법으로 新·增設, 개조허가를 받을 때 ⑤ 최고액·최저액 위반판매시 ⑥ 조정명령 위반시 ⑦ 配給 등 조치위반시 ⑧ 報告·검사의 거부, 방해, 기피시에는 허가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石油輸出入業者, 石油販売業者에게도 유사하게 적용되게 되어 있다.

그러나, 허가의 취소와 사업의 정지는 그 효과에 커다란 차이가 있으므로 別個로 區分되어 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第13條 各號의 위배시에는 따로 벌칙을 정할 수가 있고, 또 본조의 설정취지가 안정수급임을 고려할 때, 허가의 취소 또는 사업정지명령은 극히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하겠다.

그러므로 第13條 各号中 ①, ③호에 해당하거나 부정한 方法으로 정제업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②, ④, ⑤호에 해당될 때에는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⑥ 내지 ⑧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經濟罰을 적용하는 것이 법적용의 형평을 기할 수 있다고 본다.

(2) 經濟的 운용을 뒷받침하도록 改正이 필요한 사항

현행 第16條 규정에 의하면 原油·天然ガス의 구입계약, 수송계약의 체결시 動資部長官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기준 이하의 계약체결시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 規定은 종전의 原油導入時, 모두 승인받도록 한 테 비해 다소 완화시킨 것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기준 이하의 계약을 고시로 규정(기준잣대)함으로써 완화의 효과가 없는 것과 같다.

따라서 기준 이하의 계약에 대한 정부의 계속적인 규제로 國際現物市場의 급속한 상황변동(가격 및 運賃率 등락, 물량확보 등)에 신속히 대처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기동성의 저하).

실제로 原油도입상황은 항상 정부에 보고되고 있으므로, 기준 이하의 계약체결은 행정지도로 규율함으로써 저렴한 現物原油를 適期에 도입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여야 할 것이며(경제성 및 Timing 提高), 장기적으로도 油價自律化 추진방향에 비추어 原油도입에 관한 규제를 점차 완화해 가야 할 것이다.

또한 수송계약은 當該社의 손익에만 영향을 주는 항목일 뿐, 国內石油類需給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수송계약은 승인사항에서 제외되어도 무방하리라 본다.

따라서 原油구입계약은 政府承認事項으로 하되, 기준 이하의 계약 및 수송계약은 승인에서 제외하며, 다만 행정지도로서 이를 규율함이 타당할 것이다.

(3) 통합해서 규정해야 할 사항

현행 第17條 규정에 의하면, 動資部長官은 ① 國제석유사정의 변동으로 국내 소요석유의 확보가 심히 곤란하거나 ② 유통질서의 혼란으로 국민생활의 안정과 경제운용의 저해 또는 저해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石油配定, 가동 및 조업, 생산비율, 비축 및 저유시설, 도입방법 및 수출입, 위탁가공, 규격 및 정량거래, 등가교환 및 분배사용, 유통시설 및 사용, 유통구조 및 유통경로」에 관한 조정을 할 수 있으며,

第18條에 의하면 ① 戰時, 사변, 천재지변 또는 국제석유시장의 악화로 인한 ② 국내소요석유공급의 급격한 감소로 ③ 석유수급의 중대한 지장 또는 지장의 우려가 있을 경우, ④ 조정명령만으로 사태극복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배급, 양도 및 양수의 제한금지, 石油使用의 제한·금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兩條는 1次석유위기 이후 개정강화된 것으로서 그 이후 양 규정이 얼마만큼 国내石油類의 안정수급에 기여하여 왔는지는 의문이다.

第17조의 發動要件中 「유통질서의 혼란」은 용어자체가 애매모호하고, 조정명령의 발동만으로 해결될 성질이 아닌 것이며, 또, 심각한 석유위기시에는 第17조의 규정을 다소 보완한다면 第17조로서도 충분한 규율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兩條를 따로 규정할 것 없이 통합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본다.

그러므로, (1) 調整命令의 발동요건을 ① 戰時, 사변, 천재지변 ② 기타 이에 준하는 國際石油事情의 악화

의 경우에 한하도록 하고, (2) 調整命令의 대상을 ① 石油의 精製, 저장, 소비와 ② 이에 따른 石油의 配定에 한정, 이를 엄격히 함으로써, 임의적 발동에 따른 폐단을 없애고, 同時에 조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第18條 석유배급 등의 조치, 조항을 없애는 대신, 第17條를 다음과 같이 함으로써 입법의 선진화를 기할 수 있다고 하겠다.

즉 「動力資源部長官은 전시, 사변, 친체지변 또는 國際石油事情의 악화로 인하여 국내석유수급에 중대한 지장이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 석유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석유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석유판매업자, 또는 石油消費者的에게 각号의 조정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다」로 하여, 각号중 제1~9号는 현행 第17條와 동일하게 하고, 第10号의 「流通構造 및 유통 경로에 관한 조정」을 삭제하는 대신 「石油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조정」을 추가하는 것이다.

(4) 基金에 관련된 사항

가. 基金의 撤回規定 신설

기금制度는 77년에 채택, 79년 하반기 이후 시행된 것으로 현행규정에는 철회조항이 없다.

石油類価格算定期 가급적 정부부문의 비용축소가 바람직함은 주지의 일이며, 基金의 역할이 다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철회함이 마땅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현행 第17條의 2를 다음과 같이 함으로써 기금制度가 永久히 존속하는 것이 아님을 밝혀야 하겠다.

「動力資源部長官은……石油事業基金을 設置할 수 있으며, 이의 운용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철회하여야 한다.」

나. 石油產業育成을 위한 基金運用必要

현행 基金의 용도규정에 의하면, 石油事業基金이 他에너지源開發事業에도 사용될 수 있으나, 이것은 에너지원간 균형성장 및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石油關聯固有產業에 재투자되도록 제도적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석유사업법이 적극적으로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石油의 안정수급 및 석유산업의 육성을 취지로 하는데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다.

국내정유업계는 대내적으로는 他產業에 비해 낮은 수익성을 시현하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국제경쟁력의 약화 등으로 안정성장이 과거보다 더욱 위협을 받고 있으며,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시설고도화사업추진 등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되고 있다.

그러므로 基金의 용도에 설비고도화 및 설비구조개선을 위한 투자자금의 응자가 추가되어야 하겠다.

한편 石油価格平準化制度는 이미 폐지된 상황이므로 基金의 용도에 평준화제도로 인한 損失補填을 폐지하는 대신, 原油導入先多邊化지원 및 수급조절용제품도입시 손실보전사항을 삽입하는 것이 현실에 맞는 개정이 될 것이며, 石油事業基金의 용도범위를 품질관리사업에 국한하지 않고, 精油產業의 기술개발사업(新素材石油製品開發 및 품질개선사업)까지 확대시킴으로써 석유제품의 품질을 근원적으로 개선할 수 있어야 하겠다.

(5) 流通構造改善을 위한 조항 신설필요

현행 石油事業法시행령 第2條(定義)에는 流通構造間 판매계열관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70년 제정당시의 입법취지를 보아도 販売系列化的 수립·촉진이 石油類의 安定·저렴한 공급에 매우 중요한 것임을 인식하여 왔다.

그러므로 석유사업에 관한 母法인 石油事業法에 販売系列化 수립을 위한 강행적 근거규정의 설치가 강력하게 요청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조항의 신설로 판매계열화가 가능하리라고 본다.

「일정한 石油精製業者の 상표를 사용하여 石油製品을 판매하는 판매업소는 그 石油精製業者로부터 공급되는 제품만을 판매하여야 한다. 이 규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6) 行政의 民主化를 위한 규정신설

우리나라 石油政策의 수립 및 추진시, 관련업계 및 학계의 포괄적인 意見을 수렴하고, 정부시책에 대한 자발적인 협조기반을 조성하여, 관주도추진상의 문제점보완 및 객관적인 개선책의 모색을 위해서는 動資部長官 산하에 상설자문기관으로서 石油政策審議會의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를 통해 石油政策 및 제도의 심의·결정시, 업계, 학계의 사전참여가 가능하며,立法의 선진화를 통한 행정의 민주화추진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보이며, 다음

과 같은 조항의 신설로써 이것이 가능할 것이다.

「① 이 法에 의한 석유수급 및 石油政策을 심의하기 위하여 動力資源部長官 산하에 石油政策審議會를 두는다.

② 石油政策審議會의 구성과 기능 기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動力資源部長官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重要한 사항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石油政策審議會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7) 기타 개정사항

그 외에 별처사항中 품질에 관련된 사항 등 중요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經濟罰로 전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石油事業에 고유한 영역으로서 他 법률 규정과 상충될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조항의 신설도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V. 맷는 말

이상과 같이, 石油事業法이란 현법의 기초아래 다른

경제법률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法的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70년초에 제정된 이후, 점차 규제가 강화, 복잡다기하여져 웃음을 살펴보았고, 이를 토대로 현행 石油事業法의 바람직한 개정방향의 정립 및 이에 따른改正意見을 제시하였다.

원래 經濟關聯法規의 개정이란 행정수요의 증대에 따라, 개정이 되어오고는 있지만, 적극적으로는 경제구조의 형성을 위해 法이 먼저 제정, 개정될 수도 있고, 소극적으로 경제질서의 유지를 위해 후속적으로 제정 또는 개정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번 석유사업법의 개정은 입법의 民主化 및 선진화를 기하고 法体系에의附合 및 石油產業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적극적으로 법체계의 정비 및 석유산업의 구조개선을 위한 개정으로 보아야 하겠다.

行政便宜를 위한 규제의 점철보다는 과감한 민간경제에의 위임과 이에 따른 責任은 경영성과로 나타날 수 있는 적극적인 입법방향이 부각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이번 기회를 통하여 참신한 石油事業法의 개정이 기대되고 있다. *

□ 漫評 □

麗水 에너지 발족



물이 좋은(麗水) 만큼

良質의 가스를 供給하겠습니다.